

직 권 말 소 공 고

제목 : 식품영업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등)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영업신고 대상업소에 대하여 속초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사실 여부를 조회한 결과 아래와 같이 폐업확인 되었기에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 합니다.

1.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폐업신고) 및 제6항(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업소 현황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등록 폐업 일자	행정조치예정
일반음식점	황씨네염소탕	강현숙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466-1	2006.06.30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012.03.26. 예정)

3. 공고기간 : 2012.03.09 ~ 2012.03.23(15일간)
4. 행정조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의 폐업신고 미이행 및 사업자등록 폐업
5.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기한 : 2012. 03. 23 18:00시까지
6. 유의사항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고기간까지 직권말소에 따른 이의가 있는 경우 속초시 주민생활지원실 위생지도팀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 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예정된 행정조치(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가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 본 조치에 대한 문의 :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실 위생지도팀(☎033-639-2499)

2012년 03월 09일

속 초 시 장

